

급박한 위험, 멈추고 대피할 권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산업현장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판단과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이때 노동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작업중지권'이다.

현장에서의 올바른 대응



위험을 느꼈다면 'STOP'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 후 보고

대피한 뒤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한다.



위험 개선 확인

관리감독자는 즉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지체 없이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장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과 후 달라진 절차

과거에는 근로자가 위험을 느끼더라도 먼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만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고와 지시 사이의 시간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 개정 이후에는 절차가 크게 단순해졌다.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보고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하도록 했다. 즉,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지대로 대피한 뒤, 이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상황을 보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책임도 강화되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즉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안전문화로 자리 잡아야

작업중지권은 단순히 법으로 규정된 권리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아무리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험을 가장 먼저 느끼고 판단하는 주체는 근로자 자신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멈춤’을 선택했을 때 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며,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문화가 필요하다. 작업중지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진정한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포스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